

# 학교생활규정



※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약칭: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영 제9조제4호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를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 04. 25. 남성여고 제 2902호

개정 2012. 09. 28. 남성여고 제 2903호

전면개정 2021. 05. 11

전부개정 2023.12.18.(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13056)

부분개정 2025.5.16.(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00000)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 목 차

|     |  |    |
|-----|--|----|
| 제1장 | 총 칙.....                                   | 1  |
| 제2장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2  |
| 제3장 | 학생의 권리와 책임.....                            | 3  |
| 제4장 | 학생 생활.....                                 | 4  |
| 제1절 | 교내생활.....                                  | 4  |
| 제5장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 10 |
| 제1절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10 |
| 제2절 | 징계.....                                    | 11 |
| 부칙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복장 규정(2021. 10. 29.).....   | 16 |
| 부칙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 [별표 1] | 17 |
| 부칙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 분리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규정 [별표 2] | 18 |
| 별첨1 | 전자기기 규정.....                               | 19 |
| 별첨2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 20 |
| 별표1 | 징계기준표.....                                 | 24 |

##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1),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 중 동조 제1항의 제4호 규정<sup>2)</sup>에 따라 제정된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교 규칙」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 제정을 규정한 것에 근거한다.

### 제4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

1) 「교육기본법」 제12조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사의 교육권)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교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개정) 본 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결정을 통해서 개정될 수 있다.

## 제2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제6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표1)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개정한다.

제7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 ①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② 교사회의 의결
- ③ 학부모회의 의결
- ④ 학생회의 의결
- ⑤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 제8조 【문헌조사와 의견수렴】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 【심의와 결정】**

- ① 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연수와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전체구성원 11명 |       | 위원장(명) | 1명                   |      |
|-----------|-------|--------|----------------------|------|
|           |       | 교원(명)  | 3명                   |      |
|           |       | 학부모(명) | 3명                   |      |
|           |       | 학생(명)  | 4명 (40%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      |
| 순         | 유형    | 성 명    | 구성원                  | 임기   |
| 1         | 위원장   |        | 교감                   | 재직기간 |
| 2         | 교원위원  |        |                      | 재직기간 |
| 3         | 교원위원  |        |                      | 재직기간 |
| 4         | 교원위원  |        |                      | 재직기간 |
| 5         | 학부모위원 |        | 학운위원장                | 재직기간 |
| 6         | 학부모위원 |        | 1학년 대표               | 재직기간 |
| 7         | 학부모위원 |        | 2학년 대표               | 재직기간 |
| 8         | 학생위원  |        | 학생 회장                | 1년   |
| 9         | 학생위원  |        | 학생회 임원               | 1년   |
| 10        | 학생위원  |        | 학생회 임원               | 1년   |
| 11        | 학생위원  |        | 학생회 임원               | 1년   |

### 제3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1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 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 ① 학습에 관한 권리
- ②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③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 ④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⑥ 안전에 대한 권리
- ⑦ 휴식을 취할 권리
- ⑧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⑨ 사생활의 자유
- ⑩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⑪ 정보에 관한 권리
- ⑫ 양심·종교의 자유
- ⑬ 표현의 자유
- ⑭ 자치활동의 권리
- ⑮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⑯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⑰ 복지에 관한 권리
- ⑱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⑲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⑳ 급식에 대한 권리
- ㉑ 건강에 관한 권리
- ㉒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㉓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 ㉔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12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책임이 있다.

- ①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 ②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 ③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 ④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 ⑤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 ⑥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 ⑦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 ⑧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 ⑨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 ⑩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 ⑪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4장 학생 생활

### 제1절 교내생활

#### 제13조 【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수업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 제15조 【면학분위기 조성】 절제되고 근면한 생활을 통해서 면학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 ① 학습도구(교과서, 노트, 참고서 등)를 빌리지 않고 자기 것을 사용한다.
- ② 수업, 자습시간 및 쉬는 시간에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을 거부하지 않는다.
- ④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동조, 방조하지 않는다.
- ⑤ 시험 거부를 선동하거나 가담하지 않는다.
- ⑥ 시행되지 않은 시험문제를 훑거나 해킹 또는 유포하지 않는다.

**제16조 【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범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17조 【용모】**

- ① 학교는 학생의 두발 상태, 모양, 미용(네일, 귀걸이, 피어싱)을 제한할 수 있다.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복장 규정 2021. 10. 29. 참고)
- ② 학생은 등교 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복(학교 체육복)** 착용도 허용한다. 동복, 하복 및 간복의 착용 시기를 학교 측의 권고를 토대로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스스로 판단한다. 또한, 치마나 바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등교 후 교내에서 사복이 아닌 **생활복(학교 체육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하교 시 교복이나 생활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착용한다.
- ④ **교복이나 생활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하거나 슬리퍼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교내 사복 착용 적발 시 아래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⑤ **위 제1항~ 제4항의 주의 조치가 5회 이상일 때, 성찰문 1회 작성 및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추가로 모범상 수여에서 제외한다.**
- ⑥ **위 제1항~ 제4항의 주의 조치가 10회 이상일 때, 성찰문 3회 작성 및 학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추가로 학교에서 받는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연수, 학교장 추천 등)**
- ⑦ **위 제1항~ 제4항의 주의 조치가 15회 이상일 때,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교내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 ⑧ **위 제1항~ 제4항의 주의 조치가 20회 이상일 때,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 【시설이용과 환경】**

-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19조 【개인 소유물】**

-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0조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혐오 표현,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 등
9.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10.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제21조 【소지품 검사】**

- ① 교원은 학생이 제15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⑤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전자기기 사용】** 3)

- ①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②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 중 개인적인 용도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교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23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제20조와 제21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정보통신 윤리】**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25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26조 【생활지도의 방식】**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5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 【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sup>4)</sup>

- ① 도구를 이용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 ③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28조 【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적 상담과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행동 개선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9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4) 체벌금지 조항과 교사의 권한 및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 관한 항목을 반드시 넣도록 권고하며,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의 준거가 되기도 하며 최소한의 학생지도의 기준선을 명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체벌 금지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30조 【폭행, 집단따돌림, 괴롭힘】** 학교폭력,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정신적·신체적 폭행을 모의하거나 가담하지 말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① 서로 싸우거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지 않는다.
- ② 흉기를 소지하지 않으며, 특히 흉기를 사용한 폭행은 엄중 처벌한다.
-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욕설, 폭언 또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집단폭행, 집단따돌림, 집단 괴롭힘을 모의하거나 선동, 가담하지 않는다.
- ⑤ 교내·외에서 폭력단체를 조직하거나 가담하지 않는다.
- ⑥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 【음주, 흡연, 약물】** 음주·흡연·약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해악(害惡)임을 인식하고 이것에 노출되거나 빠져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교내·외 어디서든 흡연 또는 음주를 하지 않는다.
- ② 교내에서 라이터나 성냥을 휴대하지 않는다.
- ③ 중독성 물품(담배, 술, 본드, 가스, 마약류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④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에서 음주·흡연을 권유하거나 동조, 방조하지 않는다.

**제32조 【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와 학생이 교통질서 지도를 한다.
- ⑥ 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준수한다.

**제33조 【기타】** 다음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외에서 학생이 모임을 할 때
- ②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④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 제1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4조 【기능】** 본 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표창,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 위원회·소위원회를 둔다.

#### 제3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1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학교 규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반드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재 량] 위원장은 교감(교무부장), 부위원장은 인성인권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재 량]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 약간 명을 위원으로 별도 위촉할 수 있다.

- 기능: 학생 생활 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의, 단위 학교 학생 생활 교육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등

-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록은 결재·보관하며, 의결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한다.

[자료출처: 2023.학생생활교육계획(민주시민교육과)]

**제36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37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징계**

**제38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초·중등교육법」 제1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5)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5)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5. 퇴학처분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의 : 주의는 즉석에서 또는 별도 시간에 **교육**하며, 성찰문 제출과 학부모 인성인권부 상담을 실시한다. 주의가 누적될 경우 봉사활동을 시킬 수 있다.

②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③ 사회봉사 :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④ 특별교육이수 : **6일 이상으로 하고 특별교육 이수 및 상담 치료 기간으로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⑤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⑥ 퇴학처분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퇴학처분이 결정된 학생

⑦ 제38조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제39조 【징계의 운영 방법】** 유형별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1. 학교 내 봉사의 경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하며, 전문상담교사와 인성인권부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①-2. 학교 내 봉사의 운영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가. **학교환경 정리활동**

나. 학교 행사 보조

다. 교재, 교구 정비

라. 기타 제반 잡무 보조

②-1. 사회봉사의 경우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②-2. 사회봉사의 운영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인 재활 기관, 사회 복지관 등)

②-3 사회봉사의 경우 징계 대상 학생은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 교육에 대신하여 **제50조 3항**에 의거한 기간 동안 가정 학습을 받을 수 있다.

②-4 사회봉사 처분은 사회 교육기관, 직업교육 훈련 기관, 대안 학교 등으로 진로를 바꾸도록 알선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알선할 수 있다.

③-1. 특별 교육의 경우 징계 대상 학생은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치료 전문기관에 입소하여 교육 또는 치료를 이수한 후 특별 교육 이수에 관한 구두 또는 서면 보고를 한다.

③-2. 특별 교육의 운영은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나.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획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중독 치료학교의 교육이수

다. 행동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전문 기관 또는 의료 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라.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마.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1 출석정지 : 출석정지 처분 기간(가정 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④-2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3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⑦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동일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⑧ 징계 기준 외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40조 【징계 기준】**

- ① 경미한 사안은 인성인권부 혹은 학년부에서 처리한다.
- ②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되,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복적으로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1조 【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42조 【징계 심의 절차】**

- ① 심각한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지도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사안을 학생자치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교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및 확정할 수 있다.
- ④ 제33조 ①,②항의 경우 담임교사 및 담당 교사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명문화된 사전 징계 사유 통지서를 받고 직접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 소명의 기회를 받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 및 이의신청 절차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제43조 【징계 내용 통보】**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제44조 【재심 요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 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50조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 학생 교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교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6조 【징계 경감과 해제】**

-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② 징계 해제 학생은 추후 본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학생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47조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회 복장 규정 2021. 10. 29.]**

| 구분  | 항목  |         | 세부내용                  |
|---|---|---------|-----------------------|
| 교복  | 동복  | 치마      | 길이 : 윗무릎 10cm까지       |
|   |   |         | 단 : 박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   |   |         | 통 : 통 줄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   |   | 조끼, 카디건 |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착용 가능.  |
|   | 하복  | 블라우스    | 규정복 및 생활복             |
|   |   | 치마      | 길이 : 윗무릎 10cm까지       |
|   |   |         | 단 : 박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 통 : 통 줄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         |                       |
| 동복 치마 착용시 교복에 흰색, 검정색, 살구색 스타킹, 타이즈 허용<br>(반짝거림, 장식은 금지), |   |         |                       |
| ※ 기타에 해당하는 복장은 교칙에 따른 교복 착용을 전제로 함.                       |   |         |                       |
| 용모  | 머리 길이 : 자유                                      |         |                       |
|   | 염색 : 노란빛이 돌지 않는 흑갈색까지 허용                        |         |                       |
|   | 교실에서 고데기, 헤어드라이기를 소지해서는 안 됨.                    |         |                       |
| 신발  | 실외화 : 단화나 운동화를 신어야 함.                           |         |                       |
| 미용  | 네일 : 손톱 강화제(투명)만 가능함.<br>귀걸이, 피어싱 : 부착형 귀걸이만 가능 |         |                       |

1. 사계절 동복, 간복, 하복 혼용 가능합니다.
2. **학교 체육복 착용**
  - 1) 학교 체육복만 또는 치마 안에 학교 체육복 착용 가능합니다.  
 - **사복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 2) 동복 체육복 착용 기간은 학생회에서 공지합니다.  
 - ex) 2학기 1차 고사 후부터 1학기 1차고사 전까지  
 그 이외는 하복 체육복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3. 봄과 가을철 외투 가능합니다.
  - 1) 집업 후드티 (학교 지정 후드집업 외 검은색, 흰색, 회색만 가능)
  - 2) 맨투맨과 후드티 제외합니다.

⇒ **등교할 때, 학교 생활할 때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 부 칙 <2023. 12. 18.>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에 대한 규정 [별표 1]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23조 관련)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br><br>(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1,3학년=학년 교무실<br><br>2학년=2층 교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
| 2<br><br>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br>(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5일   | 1,3학년=학년 교무실<br><br>2학년=2층 교무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5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
| 3<br><br>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br>(예시) 술, 담배 등                   |      |                                |   |
| 4<br><br>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br>(예시) 도색잡지 등                                |      |                                |   |

■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26조 관련)**

| 생활지도                                     | 요건   |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1호지도<br>수업시간 중<br>교실 내 다른<br>좌석으로의<br>이동 |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br>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br>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br>반복하는 학생                            |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br>위치로 이동하도록<br>지시(교사가 학생의<br>반성 정도 및 행동<br>변화를 판단하여<br>복귀 지시) | 해당 좌석<br>위치에서 교사의<br>지시에 따라<br>수업 참여 |
| 2호지도<br>수업시간 중<br>교실 내<br>지정된<br>위치로의 분리 |  |  | 교실 내 지정된<br>위치(실외 교육 활동 시<br>학습집단으로부터의<br>분리 포함)       |   | 교과서 요약 등<br>과제 부여                    |
| 3호지도<br>수업시간 중<br>교실<br>밖 지정된<br>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br>불구하고 교육활동 지속<br>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br>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br>복도<br>(수업시간 내5-10분) | 주의를 준 후 실시  | 교과서 요약 등<br>과제 부여                    |
|  | 나  | 수업중 학생간 물리적<br>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br>경우<br>'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br>개선이 없는 경우 | 2층 교무실 복합공간<br>(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br>학생 인계 요청 후<br>교직원이 인계하여<br>학생을 학년<br>교무실로 이동                | 행동성찰문<br>교과서 요약 등<br>과제 부여           |
| 4호지도<br>정규수업<br>이외의 시간에<br>특정 장소로의<br>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 하여<br>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인성인권부실<br>(수업시간 내5-10분)                                | 점심, 저녁식사에<br>필요한 최소시간<br>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br>과제 부여                    |
|  | 나  |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br>따르지 않는 경우<br>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br>필요한 경우          | 학생부실<br>(60분 내외)                                       | 학부모에게 지도<br>시간과 사유를<br>통보   | 행동성찰문<br>과제 부여                       |
|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br>*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br>으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  |   |                                      |

【별첨 1】

## ■ 전자기기 규정 ■

### 제1조 【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 등)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⑤ 교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제2조 【전자기기 사용지도】

- ①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 ② 제1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제 1조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포함)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으며, 보관 조치가 각 교과 교사로부터 2회 이상일 때 2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교생활 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 제3조 【전자기기 일괄 수거】

- ① 필요한 경우 학생의 학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일과시간 전자기기 일괄 수거에 대한 절차는 전체교사 동의안,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학교 내부결제를 득한 후 담임 교사가 일과 중 전자기기를 걷고 방과 후 분출한다.
- ②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 수업시간 및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전자 기기 사용이 가능함.

【별첨 2】

#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 1 관련

- 1. 교육부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가.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 다.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 라. 전북교육인권센터-3306(2023.9.6.)

**제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제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생활지도   | 요건   |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1호지도<br>수업시간<br>중 교실 내<br>다른<br>좌석으로의<br>이동    |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  | 교실 내 다른 좌석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교사가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행동 변화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 해당 좌석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
| 2호지도<br>수업시간<br>중 교실 내<br>지정된<br>위치로의<br>분리    |  |  | 교실 내 지정된 위치(실외 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3호지도<br>수업시간<br>중 교실<br>밖 지정된<br>장소로의<br>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시간 내5-10분) | 주의를 준 후 실시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 나  | 수업중 학생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2층 교무실 복합공간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학년 교무실로 이동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지도<br>정규수업<br>이외의<br>시간에<br>특정<br>장소로의<br>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인성인권부실 (수업시간 내5-10분)                          | 점심, 저녁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 나  |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학생부실 (60분 내외)                                 |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보                                      | 행동성찰문 과제 부여                 |
| 기타   | *지각의 기준을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br>*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으로 정하여 실시 할 수 있음. |  |   |  |                             |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2조 제4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요 건 |  | 분리<br>기간 | 분리장소           | 분 리 방 법  |
|-----|--|----------|----------------|--|
| 1   | 제2조 제4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br>시간 | 2층 교무실<br>복합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br>(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2층 교무실<br>복합공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li>※ 학교의 장은 <u>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u></li> </ul>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br>(예시) 술, 담배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li>※ 학부모가 반환 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li> </ul>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br>(예시) 도색잡지 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li> </ul>  |

제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행동 성찰문)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
4. 청소 실시

제4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별표1】 징계 기준**

| 항  | 내 용   | 징 계      |          |          |          |          |
|----|---|----------|----------|----------|----------|----------|
|    |   | 교내<br>봉사 | 사회<br>봉사 | 특별<br>교육 | 출석<br>정지 | 퇴학<br>처분 |
| 1  | 등하교시 교복착용 규정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학생                     | ○        |          |          |          |          |
| 2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3  | 교사의 교육적 지도(수업준비, 청소,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4  | 경찰에 연행 또는 구속된 후 훈방, 석방된 학생                        |          | ○        | ○        | ○        | ○        |
| 5  | 공문서를 위조 및 변조하여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 ○        | ○        |
| 6  | 규정위반 사안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의 태도가 없는 학생 (변경)           |          |          | ○        | ○        | ○        |
| 7  | 화재를 유발한 학생  | ○        | ○        | ○        | ○        | ○        |
| 8  |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학생                       | ○        | ○        | ○        | ○        | ○        |
| 9  | 고의로 방화를 한 학생                                      |          |          | ○        | ○        | ○        |
| 10 | 사이버 범죄를 저지른 학생                                    | ○        | ○        | ○        | ○        | ○        |
| 11 | 공공 시설물이나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학생                        |          | ○        | ○        | ○        | ○        |
| 12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13 | 학교의 교육활동(수업, 시험, 행사 등)을 거부 또는 단체 행위를 주도 또는 참여한 학생 |          | ○        | ○        | ○        | ○        |
| 14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        |          |          |
| 15 | 부탄가스, 본드, 환각제, 마약류 등을 사용한 학생                      |          | ○        | ○        | ○        |          |
| 16 |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 ○        | ○        | ○        | ○        |          |
| 17 | 도박 및 유사 사행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18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19 | 교내에서 음란물을 소지, 시청, 배포한 학생                          | ○        | ○        | ○        |          |          |
| 20 |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 21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서 아르바이트한 학생                          | ○        | ○        | ○        | ○        |          |
| 22 |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답안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항  | 내 용  | 징 계      |          |          |          |          |
|----|--|----------|----------|----------|----------|----------|
|    |  | 교내<br>봉사 | 사회<br>봉사 | 특별<br>교육 | 출석<br>정지 | 퇴학<br>처분 |
| 23 | 생활규정 제20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br>- 인화물질 및 전열기<br>-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br>현저한 물품들<br>-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br>-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br>-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br>담은 물품<br>-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br>물품<br>-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br>-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차량 및 원동기 | ○        | ○        |          |          |          |
| 24 | 동일 사안으로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처벌한다.   |          |          |          |          |          |
| 25 | 징계 이행에 불응한 학생은 최초 징계 결정 사항의 상위 징계 처벌한다.  |          |          |          |          |          |
| 26 | 상기 징계 기준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것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br>거쳐 실시한다.   |          |          |          |          |          |